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303 |
|----------|-----|

2023. 6.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2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문화교육사업, 안전문화운동 등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따라서, 이 조례는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에 대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와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안전교육시행 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6. 2.~'23. 6.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03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박진희,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충청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2023. 6. 2. ~ 6. 8.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발굴 및 추진
2. 안전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북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4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군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민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전반

2. 비용 발생 요인

○ 도민 안전교육

-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
-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안전분야 종사자 순회교육 사업

○ 안전문화 진흥

- 도민 안전종합대책 설명회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연찬회
-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 공모전 개최
-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3. 관련조문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 안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
- 향후 관련법 및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을 확대 할 경우 변경 가능

나. 추계 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627,2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23년) | 2차년도 (2024년) | 3차년도 (2025년) | 4차년도 (2026년) | 5차년도 (2027년) | 계 |
|-----------------------------|-----|-----------------|-----------------|-----------------|-----------------|-----------------|-----------|
| 세 입 | | | | | | | |
| 세 출 |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1,627,200 |
|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60,000 |
| 도민 안전종합대책 설명회 | | 7,300 | 7,300 | 7,300 | 7,300 | 7,300 | 36,500 |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연찬회 |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22,500 |
|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홍보 | | 82,120 | 82,120 | 82,120 | 82,120 | 82,120 | 410,600 |
|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 | 129,000 | 129,000 | 129,000 | 129,000 | 129,000 | 645,000 |
|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75,000 |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120,200 |
|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 공모전 개최 | | 7,000 | 7,000 | 7,000 | 7,000 | 7,000 | 35,000 |
| 안전보안관 운영 | | 30,300 | 30,300 | 30,300 | 30,300 | 30,300 | 151,500 |
| 안전분야 종사자 순회교육 |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22,500 |
|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 | 9,680 | 9,680 | 9,680 | 9,680 | 9,680 | 48,400 |
| 재원 조달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1,627,200 |
| | 지방세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325,440 | 1,627,200 |

※ 비용추계(23~27) : 세출 16.3억원(소교세 13.3, 도비 3)